국 가 자 격 시 험 관 리 세 칙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1
제3조 구분
제4조 시행계획2
제5조 공고
제2장 시험관리종사자4
제6조 시험관리종사자4
제7조 시험관리종사자의 임무5
제3장 시험문제관리5
제8조 출제계획 수립5
제9조 출제의뢰5
제10조 시험문제 등 보관ㆍ폐기
제11조 시험문제 검토
제4장 시험관리
제12조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제13조 세부시행계획 수립
제14조 시험문제 선정7
제15조 시험문제의 교정•편집•인쇄9
제16조 시험문제지 보관9
제17조 시험장소 및 준비
제18조 시험 및 휴식시간
제19조 채점

	제20조	실기시험 및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Ĺ
	제21조	철도차량운전면허 기능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 실기시험-11	L
	제22조	임시시험	L
	제22조	의2 시험문제 등의 공개—————————————————————————————————	2
	제23조	합격자결정	2
	제24조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13	3
저	5장 교	육관리13	}
	제25조	교육・훈련	}
	제26조	교육장소 및 준비	3
저	6장 자	격증 교부14	Į
	제27조	교부	5
저	17장 시	험관리위원회	5
	제28조	설치	5
	제29조	위원회구성	5
	제30조	위원자격	5
	제31조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	3
	제32조	임기	3
	제33조	대리참석	7
	제34조	기능	7
	제35조	소집 및 회의	7
	제36조	의견진술 기회부여	7
	제37조	회의록 작성 및 결과보고	3
	제38조	회의록 공개 및 통지	3
	제39주	자무위원회	2

제40조	. 비밀준수의 의무
제8장 철	실도차량운전 및 철도교통관제 실무수습 관리 ················
제41조	실무수습 인증
제9장 보	L칙 ······
제42조	서약서 징구 등
제43조	수수료
제44조	수당 등
제45조	부정행위자의 처분 등
제46조	임직원의 자격시험 응시 제한
제47조	테스트 자격 등록 관리
제48조	· 결격사유 기준일 ·····
제49조	기타사항
부 친	21

국가자격시험관리세칙

1989. 1.18 제정 (규정제167호) 1990.10.17 개정 (규정제229호) 1991. 7.22 개정 (규정제254호) 1994. 3.30 개정 (규정제336호) 1996. 5.29 개정 (규정제418호) 1999. 3.18 전문개정 (규정제504호) 1999. 7.31 개정 (규정제520호) 2000. 3. 3 개정 (규정제537호) 2002. 3.22 개정 (규정제597호) 2002. 7.12 개정 (규정제611호) 2002. 9.11 제규정관리규정 개정 (규정제613호) 2003. 6.3 개정 (규정제639호) 2004. 3.12 개정 (규정제661호) 2005. 9.30 개정 (규정제716호) 2006. 5.26 개정 (규정제758호) 2007. 9.19 전문개정 (규정제807호) 2008. 3.3 개정 (규정제820호)

2008. 5.27 개정 (규정제827호) 2008.11.10 직제시행세칙 개정 (규정제841호) 2009. 10.1 개정 (규정제879호) 2011. 3.8 개정 (규정제918호) 2011. 6.2 개정 (규정제926호) 2012. 7.17 개정 (규정제969호) 2013. 7. 16 개정(규정제1000호) 2015. 3. 3 개정(규정제1059호) 2017. 4.18 개정(규정제1132호) 2017.10.10 개정(규정제1145호) 2017.12. 4 제규정관리규정 개정(규정제1160호) 2018.9.20. 개정(규정제1194호) 2020.02.26. 일부개정(규정제1270호) 2020.12.24. 일부개정(규정제1308호) 2021.11.4. 일부개정(규정제1352호) 2023.08.28 일부개정(규정제1437호) 2024.01.23. 일부개정(규정제1458호) 2024.12.5. 일부개정(규정제148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교통안전법」, 「항공안전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철도안전법」에 의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7., 2017.12.4., 2020.12.24., 2024.12.5.>

- 제2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국가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의한다. <개정 2012.7.17, 2013.7.16., 2015.3.3., 2017.10.10., 2018.9.20., 2020.12.24.>
 - 1.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 2.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시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및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한정심사(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0.2.26.>
 - 3.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종사 자격시험(이하, "버스운전 자격시험"이라 한다) 또는 교통안전체험 이론 및 실기교육(이하, "버스교통안전체험교육"이라한다) <개정 2020.12.24.>
 -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종사 자격시험(이하,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이라 한

- 다) 또는 교통안전체험 이론 및 실기교육(이하, "화물교통안전체험교육"이라 한다) <개정 2020.12.24>
- 5.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 <개정 2020.12.24., 2024.12.5.>
- 6.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운전업무종사 자격시험(이하, "택시운전 자격시험"이라 한다) <신설 2020.12.24.>
- 제3조(구분)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5.27, 2009.10.1, 2012.7.17, 2013.7.16., 2015.3.3., 2017.10.10., 2018.9.20., 2020.12.24.>
 - 1.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전용 전산망과 연결된 장비를 이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하며, 별도로 시험의 일부면제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개정 2020.12.24.>
 - 2.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시험 및 항공종사자 자격증명한정심사(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는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실시하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은 5등급 이하 시험과 6등급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2.26., 2020.12.24>
 - 3. 삭제 <2015.3.3>
 - 4. 버스운전 자격시험과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및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전용 전산망과 연결된 장비를 이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하며,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버스운전 자격시험 및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은 교통안전체험교육으로 대체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 5.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은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으로 구분하며,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은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12.24., 2024.12.5.>
- 제4조(시행계획) 시험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험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2009.10.1, 2012.7.17, 2013.7.16., 2017.10.10., 2018.9.20.>
 - 1.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교통안전관리자의 수급현황을 파악하여 시험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실시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4>
 - 2.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시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및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한정심사(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는 매년 다음 연도의 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26.>
 - 3.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또는 화물교통안전체험교육은 해당 연도의 자격시험 및 화물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최초 시행일 90일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일 30일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 4.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은 매년 다음 연도의 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4.12.5.>
- 5. 버스운전 자격시험·택시운전 자격시험 및 버스교통안전체험교육은 해당 연도의 자격시험 및 버스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최초 시행일 30일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일 10일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4>
- **제5조(공고)** 시험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2009.10.1, 2011.3.8, 2012.7.17, 2013.7.16, 2015.3.3., 2017.10.10., 2018.9.20.>
 - 1.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시험시행 90일전까지 시험일정과 응시과목 등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훈련은 실시 60일전까지 교육·훈련 기간 및 장소 등을 일간신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4.>
 - 2.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시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및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한정심사(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는 매년도 말까지 시험의 일시, 장소, 응시자격 및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시험시행계획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의 장소가 시험공고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에 시험실시 3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전용 전산망과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시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및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한정심사(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를 수시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험 일정에 관한 다음 해 계획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2.26. 2020.12.24., 2024.12.5.>
 - 3.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및 화물교통안전체험교육은 해당연도의 자격시험 및 화물교통 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을 최초 시행일 90일전까지 일간신문 및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시행일 30일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 4.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시험은 시험의 일정·응시과목 등을 포함한 다음연도의 시험시행계획을 매년도 11월30일까지 일간신문 및 공단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 5. 버스운전 자격시험 택시운전 자격시험 및 버스교통안전체험교육은 해당연도의 자격시

험 및 버스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을 최초 시행일 30일전까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시행일 10일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4>

제2장 시험관리종사자

- 제6조(시험관리종사자) ① 시험관리종사자는 총괄책임자, 시험장관리책임자, 연금·채점관리책임자, 교정·편집·인쇄요원, 문제출제·검토·선정·평가위원·진행요원, 감독요원, 채점요원, 실기시험위원, 실기보조요원, 교육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20.12.24>
 - ② 시험관리종사자 지정기준은 별표1의 시험·교육관리 종사자 지정기준과 같다. <개정 2020.12.24.>
 - ③ 버스운전 자격시험·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택시운전 자격시험의 시험관리종사자 중 문제출제·검토·선정·평가위원 및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교육 등 에 대한 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7.,2020.12.24. >
 - 1. 공단의 연구·교수직렬로서 운송종사자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 <개정 2020.2.26., 2020.12.24.>
 - 2. 6급 이상의 공무원 중 해당분야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3.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5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는 자
 - 4.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5. 위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0.12.24.>
 - ④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시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및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한정심사(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의 시험관리종사자 중 문제출제·검토·선정·실기시험위원의 자격기준은 관계법령 및 공단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12.5.>
 - ⑤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의 시험관리종사자 중 실기시험위원 자격기준은 관계법령 및 공단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12.5.>
 - ⑥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임자가 없거나 지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력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4항에서 이동 <2024.12.5.>]

⑦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문제집 제작 등 영리 행위를 하는 자는 시험관리종사자로 지정 할 수 없다. <신설 2018.9.20.><개정 2024.12.5.>

[제5항에서 이동 <2024.12.5.>]

⑧ 시험관리종사자는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외부강의 등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24.12.5..>

제7조(시험관리종사자의 임무) 제6조에 규정한 시험관리종사자의 임무 및 감독요원 행동절차는 별표 2의 시험·교육관리 종사자 세부임무 및 별표 3의 감독요원 행동절차와 같다. <개정 2020.12.24>

제3장 시험문제관리

- **제8조(출제계획 수립)** ① 시험주관부서장은 매년 보관중인 시험문제를 검토하여 시험문제의 출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과목별 선정문제수 및 해당연도 자격별 시험횟수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 제9조(출제의뢰) ①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할 경우에는 시험문제출제위원단중에서 과목당 3 명 이상을 시험문제출제위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항 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시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및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한정심사(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24.12.5.>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제수가 소수이거나 위촉한 출제위원이 한정되는 등 불가피하게 3명 이상 지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출제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2.5..>

[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4.12.5.>]

③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시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및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한정심사(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의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하는 경우 출제위원의 지정은 관계법령 및 공단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 <신설 2024.12.5.>

[종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4.12.5.>]

④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할 경우에는 출제위원에게 별표 4의 '문제출제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게 한 후, 출제문제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문제카드에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시험문제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4.12.5.>]

⑤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한 경우에는 출제위원으로 하여금 개인별로 송부된 출제지침에 따라 해당과목의 문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내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보안장치가 된 전산망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 장애로 인하여 디스켓, CD 등으로 문제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암호를 설정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시험주관부서장은 출제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4.12.5.>]

⑥ 제2조 각 호에 따른 시험의 출제범위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제4항에서 이동 <2024.12.5.>]

- 제10조(시험문제 등 보관·폐기) ① 시험주관부서장은 출제위원이 작성한 시험문제카드 및 문제수록물(디스켓, CD 등)을 인수한 후 2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관리하여 야 한다. <개정 2020.12.24.>
 - ② 시험주관부서장은 시험문제가 내장된 시험문제관리 전산프로그램 컴퓨터(이하, "문제관리용 컴퓨터"라 한다) 및 문제유실에 대비한 대체용문제수록물(CD 등)을 2중 잠금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문제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문제의 열람, 검토 및 선정ㆍ평가업무 수행자에 대한 업무영역 범위를 지정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24>
 - ③ 시험문제카드 등 시험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차수별로 정리하여 2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2018.9.20.>
 - 1. 시험문제카드: 문제 관리용 컴퓨터에 이관 후 폐기
 - 2. 문제수록물(디스켓, CD 등): 문제 관리용 컴퓨터에 이관 후 폐기
 - 3. 시나리오(철도차량 운전면허 기능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 실기시험 평가를 위해 과목별로 시험문제를 조합한 것), 시나리오 케이스(선정된 시나리오를 표준운행 노선 또는 열차 스케쥴에 배치한 것): 문제 관리용 컴퓨터에 이관 후 폐기 <개정 2020.12.24>
 - 4. 시험문제 원안 및 보관용 문제지: 1년
 - 5. OMR카드 및 실기채점표: 1년
 - 6. 응시원서 및 서약서 등: 1년
 - 7. 최종합격자명단: 영구
 - 8.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응시자 녹음 파일.(녹음 파일은 시험관리시스템에 이관하여 아래 각 목의 기간 보관 후 폐기) <개정 2018.9.20., 2020.2.26., 2024.12.5.>

가. 4등급 이하: 10년

나. 5등급: 10년 다. 6등급: 영구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시험문제 원안 및 보관용 문제지, OMR카드 및 실기채점표는 시험주관부서장 입회하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관련 서류 폐기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 제11조(시험문제 검토) ① 시험문제 검토는 시험문제카드 또는 문제 관리용 컴퓨터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12.24>
 - ② 시험주관부서장은 시험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검토위원에게 문제검토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사전에 주지시켜야 하며, 연금관리책임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상시 시행되는 시험으로 인해 비정기적으로 시험문제를 검토해야 할 경우 연금관리책임자를 입회시키지

-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 ③ 시험문제를 검토한 결과 부적격으로 분류된 문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 1. 수정 · 보완이 가능한 시험문제는 수정 · 보완 <개정 2020.12.24>
- 2. 수정·보완이 불가능한 시험문제는 폐기처분 <개정 2020.12.24>

제4장 시험관리

- 제12조(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① 응시원서는 시험주관부서에서 교부 및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본부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7.17., 2018.9.20.>
 - ② 응시원서의 접수는 방문,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응시원서, 구비서류, 수수료 등을 접수기간내에 이상없이 제출한 것에 한한다.
 - ③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수험번호, 응시지역, 시험일시, 장소를 기재한 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응시표를 응시자 본인이 직접 출력하여 사용하게 하며, 시험일시 및 장소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응시표에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삭제 <2021.11.4.>
 - ⑤ 시험응시자가 시험에 불합격하여 재응시할 경우 최초응시원서 접수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는 신청서를 제외한 구비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 제13조(세부시행계획 수립) 총괄책임자는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 1. 세부시행일정계획
 - 2. 분야별 응시현황
 - 3. 시험실별 응시과목 현황
 - 4. 시험관리종사자 명단
 - 5. 소요경비 산출내역
- 제14조(시험문제 선정) ① 문제선정시에는 시험문제의 편중 지양, 난이도(상·중·하) 안 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시험의 자격별·과목별 선정문제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5.27., 2012.7.17., 2017.10.10., 2018.9.20.>
 - 1.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 가. 교통법규 50문항 <개정 2020.2.26.>

- 나. 교통법규외 기타과목 25문항 <개정 2020.2.26.>
- 2.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시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및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한정심사(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0.2.26.>
- 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은 각 과목별 20문항이상 40문항이하. 다만, 전과목을 혼합하여 실시할 경우 과목별 문항은 10문항이상 20문항이하의 범위내로 한다. <개정 2020.2.26., 2020.12.24.>
- 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한정심사는 각 종류(기종)별 20문항 이상 40문항 이하 <개정 2020.12.24.>
- 다.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이하 "항공영어구술시험 실시요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8.9.20.>
- 3. 버스운전 자격시험
- 가. 교통 · 운수 관련법규 및 교통사고 유형 25문항
- 나. 안전운행 요령 25문항
- 다. 자동차관리 요령 15문항
- 라. 운송서비스(운전자의 예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5문항
- 4.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개정 2020.12.24>
- 가.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규 25문항
- 나.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25문항
- 다. 화물취급요령 15문항
- 라.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15문항
- 5.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 가. 고속철도차량: 고속철도 운전 관련 규정 20문항, 고속철도 시스템일반 20문항, 고속철 도차량의 구조 및 기능 40문항, 비상시 조치 등 20문항, 고속철도 운전이론 일반 20문항
- 나. 제1종 전기차량: 철도 관련 법 20문항, 철도시스템 일반 20문항, 전기기관차 구조 및 기능 40문항, 비상시 조치 등 20문항, 운전이론 일반 20문항
- 다. 제2종 전기차량: 철도 관련 법 20문항, 도시철도시스템 일반 20문항,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40문항, 비상시 조치 등 20문항, 운전이론 일반 20문항
- 라. 디젤차량: 철도 관련 법 20문항, 철도시스템 일반 20문항,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40문항, 비상시 조치 등 20문항, 운전이론 일반 20문항
- 마. 철도장비: 철도 관련 법 20문항, 철도시스템 일반 20문항, 기계·장비차량의 구조 및 기능 40문항, 비상시 조치 등 20문항
- 바. 노면전차: 철도 관련 법 20문항, 노면전차 시스템 일반 20문항,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 40문항, 비상시 조치 등 20문항 <개정 2021.11.4.>
- 6.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

- 가. 철도 관제자격증명: 철도 관련 법 20문항, 철도시스템 일반 20문항, 관제 관련 규정 20문항, 철도교통 관제 운영 20문항, 비상 시 조치 등 20문항
- 나.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 철도 관련 법 20문항, 도시철도시스템 일반 20문항, 관제 관련 규정 20문항, 도시철도교통 관제 운영 20문항, 비상 시 조치 등 20문항

[전문개정 2024.12.5.]

- 7. 택시운전 자격시험 <신설 2020.12.24>
- 가.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20문항
- 나. 안전운행 요령 20문항
- 다. 운송서비스 20문항
- 라. 지리 10문항 <개정 2023.01.23.>
- ③ 시험문제는 문제선정위원이 문제 관리용 컴퓨터를 활용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제 관리용 컴퓨터를 활용한 선정이 불가능할 때는 수동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 ④ 문제 관리용 컴퓨터를 활용하여 시험문제를 선정하고자 할 때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문제 편집이 필요할 경우 문제를 수정하여 출제할 수 있다. 다만, 수정된 문제에 대한 출 제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4>
- 제15조(시험문제의 교정·편집·인쇄) ①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문제는 교정·편집·인쇄 요원으로 지정된 자가 보안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교정·편집·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 ② 시험문제의 편집은 정답이 특정한 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유형을 A, B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를 활용한 시험의 경우는 문제유형을 A. B등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5.>
 - ③ 문제지 인쇄는 시험 전일 인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총괄책임자는 인쇄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를 활용한 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12.5.>
 - ④ 인쇄가 끝난 문제지는 과목별, 교시별로 지정된 봉투에 넣고 밀봉한 다음 각 시험장별로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컴퓨터를 활용한 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12.5.>
 - ⑤ 연금관리책임자는 시험지 인쇄 종료 후, 시험 내용 등이 포함된 기록지(메모리 포함)를 파기하는 등 시험문제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 제16조(시험문제지 보관) ① 교정·편집·인쇄진행 및 감독자는 제15조에 따라 봉인한 시험문제지를 시험 당일 시험장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주관부서에서 시험문제지를 지역본부로 이송하여 시험을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본부장 또는 처장에게 시험 문제지를 보관토록 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장 또는 처장은 이를 시험 당일 시험장 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7., 2018.9.20., 2020.12.24.>

- ② 시험장관리책임자는 밀봉 날인된 문제지를 인수한 경우 및 시험 종료 후 회수한 시험 문제지를 파기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인계·인수 및 파기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활용한시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신설 2024.12.5.>
- 제17조(시험장소 및 준비) ① 시험장은 공단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시험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험실당 수용인원은 40명을 기준으로 하되 응시자 수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 ③ 진행요원은 각종 부착물을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고, 시험용품을 시험실별로 구분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컴퓨터를 활용한 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12.5.>
 - ④ 시험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열표에 따라 작성한 좌석배열표에 의하여야 하며, 좌석배열표는 시험장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컴퓨터를 활용한 자격시험의 경우에는 좌석배열표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2020.12.24>
 - 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시험 실기시험장, 항공영어구 술능력증명시험장은 시험에 필요한 항공기(모의비행장치 포함), 관제탑(모의관제장비 포함), 운항관리실 등 일정시설을 갖춘 외부시험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2.5.>
 - ⑥ 공단이 지정하는 시험장소 외의 장소에서 시험을 시행할 경우 시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 제18조(시험 및 휴식시간) ① 시험시간은 각 과목당 문제수에 따라 정하되 1문제당 1분 기준으로 하며, 휴식시간은 10분을 부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시험시간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신설 2024.12.5.>
 - 1. 시험입실시간 : 시험 시간 최소 20분 전에 입실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시작 전까지입실할 수 있다.
 - 2. 시험시간: 시험지 배포(컴퓨터를 활용한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문제의 화면표출) 시부터 답안지 제출까지로 한다. 단, 제2조제2호의 자격시험은 시험지 배포(컴퓨터를 활용한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문제의 화면표출)시부터 시험장 퇴실시간 까지로 한다.
- 제19조(채점) ① 채점은 광학기호(O.M.R카드) 또는 전용 전산망과 연결된 컴퓨터에 의하여 전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기 고장 등으로 채점이 불가능할 때에는 수작업으로 할 수 있으며, 수작업 시에는 복수로 채점하고 연금·채점관리책임자 또는 시험장관리책임자가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2020.12.24.>
 - ② 채점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부주의로 판독이 거부된 답안카드는 "0"점 처

리한다. 다만, 수험번호, 생년월일 및 과목코드를 오기·미기재한 답안카드는 전산기로 보정하여 채점한다. <개정 2020.12.24.>

- 1. 이중기재, 답안 미기재, 적색계통의 필기구를 사용한 답안카드
- 2. 훼손된 답안카드
- 제20조(실기시험 및 항공영어구슬능력증명시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시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및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한정심사(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의 실기시험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규정이 없거나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실기시험위원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5.27., 2018.9.20., 2020.2.26., 2020.12.24.>
- 제21조(철도차량 운전면허 기능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 실기시험) 철도차량 운전면허 기능시험(이하, 이 조에서 "기능시험"이라 한다) 및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 실기시험 (이하, 이 조에서 "실기시험"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개정 2008.5.27, 2017.10.10., 2020.12.24.>
 - 1. 시험준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기능시험에 필요한 장비 및 장소는 면허시험 종류별로 정하여야 한다.
 - 나. 시험실시전이나 실시 중 천재지변, 장비의 심각한 고장으로 예정된 기능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응시자에게 변경사유 및 차후 시험일정에 대하여 통지하고 시험을 중단할 수 있다.
 - 다. 제1호나목에 의한 사유로 시험시행에 차질이 우려될 경우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시행지침 제20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의 기능시험 표준채점표 및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시험시행지침 제20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의 실기시험 표준채점표를 평가시스템에서 응시생별로 출력하여 평가위원에 의한 구술로 실시할 수 있다.
 - 2. 시험장비 점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면허종류별 기능시험은 실제차량 또는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 기시험은 전기능모의관제연습기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 로부터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 및 철도운영기관의 장비 및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 나. 평가위원 및 감독요원은 시험에 사용될 시설 및 장비의 안전 및 정상기능 상태와 평가시스템과의 정상작동상태를 시험 시작 전 확인하여야 한다.
 -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장관리책임자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 나. 기능시험의 실시시간은 50분, 실기시험의 실시시간은 60분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주관 부서장은 상황부여의 횟수, 난이도 등에 따라 시험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22조(임시시험) ① 긴급한 상황 등에 따른 부족한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해 철도운영기관 등 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업체에서 요구한 인원에 한해 임시시험을 시행하며 연간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정기시험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다만, 기일이 촉박할 경우 시험일정을 단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5.27., 2017.10.10., 2020.12.24.>
 - ②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시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및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한정심사(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의 경우 항공사 또는 전문교육기관 등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세부 절차는 관계법령 및 공단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24.12.5.>
 - ③「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24조제8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교육·훈련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를 대상으로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시험의 공고, 응시절차,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합격자의 결정방법 및 시험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5조제1호, 제12조, 제14조제2항제1호가목,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5.27., 2020.12.24.>

[제2항에서 이동 <2024.12.5.>]

④ 제1항 및 제2항 따른 임시시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임시시험 요청업체 등에서 부담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임시시험의 제반비용을 산출할 때 평일에 시행하는 학과시험의 수당은 휴무일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신설 2008.5.27.><개정 2024.12.5.>

[제3항에서 이동 <2024.12.5.>]

- 제22조의2(시험문제 등의 공개) ① 시험의 문제 및 채점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점관련 자료는 수험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방문자에 한해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만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답안지 공개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에 한하며, 본인 확인 후 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9.20.]

- **제23조(합격자결정)** ① 필기(학과)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1., 2012.7.17., 2017.10.10>
 - 1.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의 경우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각 과목당 총점의 40점 이상(다만, 철도차량 운전면 허시험의 철도 관련 법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의 관제관련규정의 경우 60점 이상), 전과목 총점평균 60점 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2024.12.5.>
 2.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시험, 한정심사의 경우 과목별합격점수는 출제된 문제의 매 과목당 70%이상 정답을 얻은 사람을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2.26>

- 3. 버스운전 자격시험·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택시운전 자격시험의 경우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평균총점이 60점 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 ② 실기(기능)시험 및 항공영어구슬능력증명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0., 2018.9.20.>
- 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시험. 한정심사 및 항공영어구술 능력증명시험의 합격기준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2.26., 2024.12.5.>
- 2.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의 경우 시험 과목 당 60점 이상 총점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2024.12.5.>
- ③ 삭제 <2008.5.27>
- ④ 합격자는 전 과목 성적을 집계하여 결정한다.
- 제24조(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① 시험주관부서장은 시험실시 결과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합격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2018.9.20.>
 - ② 자격시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주관부서장은 10일 이내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단,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시험,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 및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한정심사(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은 관계법령 및 공단 제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8.9.20.> <개정 2024.12.5.>
 -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 받은 시험주관부서장은 2인 이상의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처리하되 정답이 없는 문제는 답지 전항(全項)을 정답으로 처리한다. 다만, 오탈자, 계산착오 등 단순 착오문제는 전문가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9.20.>

제5장 교육관리

- 제25조(교육·훈련) ① 교통안전관리자자 교육·훈련 관련 부서장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일부면제를 위한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고,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게 교육·훈련과정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2009.10.1., 2015.3.3., 2020.12.24.>
 - 1. 교육·훈련은 7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 2. 제1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법규와 교통안전관리론의 교육·훈련시간이 전체 교육·훈련시간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법규와 교통안전관리론에 대한 교육·훈련시간을 10퍼센트

- 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개정 2020.12.24.>
- 3. 시험의 일부면제를 위한 교육·훈련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그 수료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간 2번의 시험에 대하여 교통 법규를 제외한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신설 2020.2.26., 개정 2020.12.24.>
- ② 지역본부장 또는 처장은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1일 8시간 (중식시간 제외)의 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개정 2012.7.17., 2018.9.20., 2020.12.24., 2021.11.4.>
- 1. 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지정한 일시까지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교육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 2. 교육생의 출석여부는 교육차수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장 또는 처장이 지정한 직원은 교육생의 출석여부를 확인하여 화물운송종사프로그램상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 3. 교육수료자는 전과정 교육시간에 출석한 사람과, 2일 이상의 교육시간(동일 교육과목 이수시간 제외)을 합산하여 8시간(중식시간 제외) 이상인 사람을 교육수료자로 인정한다.
- 4. 교육생이 교육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교육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퇴실조치하여야 한다.
- ③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장은 버스운전 자격시험 및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의 대체를 위한 버스·화물교통안전체험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고, 이수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개정 2015.3.3., 2020.2.26., 2020.12.24.>
- 1. 교육대상자가 지정한 일시까지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교통안전체 험교육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 2. 버스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24시간, 화물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의 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이수자로 한다.
- 3. 교육생이 교통안전체험교육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교육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경우(무단이탈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관계자의 지시 등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는 퇴실 조치하여야 한다.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2.26.>
- 제26조(교육장소 및 준비) ① 교육장소는 공단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시험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 ② 교육인원은 교육장소에 따라 적정인원을 정하여 교육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자격증 교부

제27조(교부) 시험에 합격하거나 교육을 필한 자격증(면허증 및 자격증명서 포함한다. 이하 같다)발급대상자가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자격증교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시험주관부서장은 전산에 등록한 후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2018.9.20.>

제7장 시험관리위원회

- 제28조(설치) 시험관리 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시험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0.12.24.>
- **제29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8.5.27>
 - ② 위원장은 시험주관본부의 실장 또는 원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없는 때에는 시험주관본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9.20.>
 - ③ 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11.6.2>
 - ④ 외부위원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 내부위원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신설 2011.6.2., 개정 2020.12.24.>
 - ⑤ 대외보안 및 고도의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비공개로 모집하되, 관련분야 외부위 원 전문가단(Pool)을 구성하여 위촉한다. <신설 2011.6.2.>
 - ⑥ 삭제 <2024.12.5.>
- 제30조(위원자격) ①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로 한다.
 - 1.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해당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2. 해당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개정 2020.12.24.>
 - 3.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담당 부서장급 이상의 경력소유자
 - 4. 공인된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5.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 고시「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제8조 및 제27조에 따른 실기시험 위원으로 선정된 자 <개정 2020.2.26., 2024.12.5.>
 - 6. 그 밖에 관련 분야 경력 등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0.12.24.>
 - ② 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관련 직무 경력이 있는 4급 이상 직원

- 2. 그 밖에 관련 분야 경력 등이 제1호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 ③ 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부위원용 시험관리위원 청렴서약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내부위원용 시험관리위원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2020.12.24.>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4.12.5.>

[본조신설 2011.6.2]

- 제3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시험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그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4. 심의 안건의 시행으로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 5.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안건 대상 업체 등에 재직한 경우
 - 6.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심의안건과 관련된 감독부서에 소속된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④ 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간사 또는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위원은 제34조에 따른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공단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용역・공사 등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12.24.>

[본조신설 2011.6.2]

- 제32조(임기)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신설 2024.04.17.>
- ② 임기 중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된다.
- 1.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2. 담당 심의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 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4. 제40조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신설 2024.12.5.>
- ③ 외부위원 임기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

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12.5.>

[본조신설 2011.6.2.]

- 제33조(대리참석) ① 위원회 구성위원 중 외부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 ② 내부위원이 위원회 참석이 불가한 경우 해당부서의 4급 이상을 대리위원으로 하여 그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본조신설 2011.6.2]

- **제3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6.2., 2013.7.16., 2017.10.10., 개정 2020.12.24.>
 - 1. 시험 및 교육관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2. 부정행위자의 조치에 관한 사항
 - 3. 출제오류, 오답처리에 관한 사항
 - 4. 기타 시험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 5. <삭제 2024.12.5.>
 - 6. <삭제 2024.12.5.>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조제1항에 따른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1.6.2., 2020.12.24.>
- 제35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사전 의결한 경우에만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되, 연 속하여 2회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2>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의결에 참여한다. <개정 2016.06.02. 2024.12.5.>
- 제36조(의견진술 기회부여) ① 위원장은 심의 사항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 한 때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을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전송, 이메일 통지)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5.> [본조신설 2011.6.2.]
- 제37조(회의록 작성 및 결과보고) ① 간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험관리위원회 회의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1.6.2., 2020.12.24. 2024.0.00>
 - ②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8조(회의록 공개 및 통지)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00>
 - ② 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6.2]

- 제39조(자문위원회) ① 시험주관부서장은 시험업무에 관하여 전문가 및 사업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2024.0.00>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제28조부터 제3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4.12.5.>
- 제40조(비밀준수의 의무) ① 시험관리위원회 활동에서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신설 2024.12.5.>

제8장 철도차량운전 및 철도교통관제 실무수습 관리

- 제41조(실무수습 인증) ① 면허관리주관부서장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제 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수습 교육이수내용을 통보 받았을 때, 실무수습교육 이수사항을 확인하고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에 실무수습 인증내역을 기록하여 약 한다. <개정 2017.10.10., 2020.12.24., 2024.12.5.>
 - ② 철도차량운전 및 철도교통관제 실무수습교육인증 기재사항 중 인증구간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10.10.>

[제40조에서 이동 <2024.12.5.>]

제9장 보칙

제42조(서약서 정구 등) ① 총괄책임자는 시험관리종사자가 시험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험업무 착수전에 연금·채점관리책임자, 교정·편집·인쇄요원, 문제출제·검토·선정·평가위원, 진행요원, 감독요원, 채점요원에게는 별제 제11호서식의 서약서, 별지 제12호서식의 감독요원 서약서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따른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 ②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시험 한정심사의 실기시험위원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서약서를 짓구한다. <개정 2020.2.26>
- ③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의 작업형실기시험 보조요원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안 각서를 징구한다.
- ④ 항공교통관제분야 및 정비분야 작업형 실기시험 응시생에게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 험자 서약서를 징구한다. <개정 2020.12.24.>
- 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교육의 교육 강사에게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교육 강사 청렴서약서를 징구한다. <신설 2018.9.20. 개정 2020.12.24.>
- ⑥ 시험관리종사자 중 문제검토·선정·평가위원, 교정·편집·인쇄 및 채점요원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격리 수용한 후 연금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외부와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2020.12.24.>
- ⑦ 시험관리종사자는 시험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9.20.>

[제41조에서 이동 <2024.12.5.>]

- 제43조(수수료) ① 시험수수료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수납처리는 예산회계규정을 적용한다.
 - ② 수수료 및 실비의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환불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2020.12.24.>
 - 1. 수수료 및 실비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분
 - 2.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수료 및 실비 전액
 - 3. 응시자가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실비 전액
 - 4. 응시자가 접수기간 만료 후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의 환불기준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는 관계법령에 의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여 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응시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1.11.4.>

[제42조에서 이동 <2024.12.5.>]

제44조(수당 등) 시험에 관한 각종 수당은 강사료등제수당지급세칙을 준용한다.

[제43조에서 이동 <2024.12.5.>]

- 제45조(부정행위자의 처분 등) ① 부정행위자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주관부서 장이 별지 제19호 서식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통지 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의견 제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한은 송달일로부터 10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이용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며 처분대 상자의 주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지한다. 다만, 처분대상자가 동의하

- 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처분대상자가 알기 쉽도록 인터넷홈페이지(lic.kotsa.or.kr)에 30일 동안 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한은 게시일로부터 30일로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다.
- ⑥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시험관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 처분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21호 서식에 따라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문자메시지 전송, 이메일 통지)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처분대상자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 2. 제6항에 따라 개최된 시험관리위원회에서 처분을 결정한 경우
- ⑧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자는 제7항에 따른 처분확정 전까지 동일 시험에 대한 접수를 제한한다.
- ⑨ 제7항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부정행위자 연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전산시스템으로 갈음 할 수 있다.
- ① 제7항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확정된 자는 당해 시험 결과를 불합격으로 하고, 부정행위를 실시한 해당 시험일로부터 최대 2년간 동일 시험 응시를 제한한다.
- ① 부정행위자의 기준 및 적발 시 조치사항은 별표 6의 부정행위자의 기준 및 적발시 조치사항과 같다. <개정 2018.9.20., 2020.12.24.>
- ① 부정행위자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12.5.]

[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제49조로 이동 <2024.12.5.>]

- 제46조(임직원의 자격시험 응시 제한) ① 임직원의 자격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사항은 별표7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제한에도 불구하고 직무역량 강화 등 부득이하게 자격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③ 제2조에 따른 자격시험은 근무(복무)시간 중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제2조에 따른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임직원은 근무지 외 시험장소에서 자격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단, 시험장소가 근무지 내에만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3.8.28.]

[전문개정 2024.4.00.]

- 제47조(테스트 자격 등록 관리) ① 시험주관부서 직원은 시험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자격시험 운영 개선을 위한 테스트 자격을 생성 및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생성된 테스트 자격은 업무 활용 종료 후 삭제하여야 하며, 지속 활용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2호 서식의 테스트 자격번호 관리 대장에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전산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테스트 자격을 생성하여 삭제하였을 경우에는 생성·등록·삭제 등 이력을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5.]

- 제48조(결격사유 기준일)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버스운전자격시험, 택시운전자격시험은 시험일 기준으로 한다.
 - 2. 교통안전관리자자격시험은 자격증 발급일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2.5.]

제49조(기타사항) 이 세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5.]

[제45조에서 이동 <2024.12.5.>]

부 칙 <규정 제167호, 1989.01.18.>

이 세칙은 198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29호, 1990.10.17.>

이 세칙은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54호, 1991.07.22.>

이 세칙은 199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36호, 1994.03.30.>

이 세칙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18호, 1996.05.29.>

이 세칙은 199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04호, 1999.03.18.>

이 세칙은 1999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20호, 1999.07.31.>

이 세칙은 1999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37호, 2000.03.03.>

이 세칙은 200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97호, 2002.03.22.>

이 세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11호, 2002.07.12.>

이 세칙은 200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규정관리규정) <규정 제613호, 2002.09.11.>

이 세칙은 200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39호, 2003.06.03.>

이 세칙은 2003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61호, 2004.03.12.>

이 세칙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716호, 2005.09.30.>

이 세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758호, 2006.05.26.>

이 세칙은 200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807호, 2007.09.1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세칙의 폐지) 다음 각호의 세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1. 화물운송종사자격업무세칙
- 2.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업무세칙

부 칙 <규정 제820호, 2008.03.03.>

이 세칙은 2008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827호, 2008.05.2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시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조제1호 및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② 이 세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세칙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세칙에 따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부 칙 (직제시행세칙) <규정 제841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제규정 및 지침의 개정) ①~⑦ 생략

- 8 국가자격시험관리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팀장"을 "처장"으로 한다.
- ⑨~36 생략

부 칙 <규정 제879호, 2009.10.01.>

이 세칙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918호, 2011.03.08.>

이 세칙은 2011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926호, 2011.06.02.>

이 세칙은 2011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969호, 2012.07.17.>

이 세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000호, 2013.07.16.>

이 세칙은 2013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059호, 2015.03.03.>

이 세칙은 2015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32호, 2017.04.18.>

이 세칙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45호, 2017.10.10.>

이 세칙은 201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규정관리규정) <규정 제1160호, 2017.12.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법률 제14939호(2017.10.24.) 및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시행중인 공단의 제 규정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교통안전공단법"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부 칙 <규정 제1194호, 2018.09.20.>

이 세칙은 201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270호, 2020.02.26.>

이 세칙은 202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308호, 2020.12.24.>

이 세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352호, 2021.11.04.>

이 세칙은 2021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37호, 2023.08.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취득 제한 적용례) 제46조의 신설 규정은 이 개정 세칙 시행일에 시험업무부서에 개직하고 있거나 시험업무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전보된 날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직원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1458호, 2024.01.23.>

이 세칙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83호, 2024.12.5.>

이 세칙은 2024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6조제2항 관련) <개정 2008.11.10, 2012.7.17., 2015.3.3., 2018.9.20. 2020.2.26.,2024.12.5.>

시험 · 교육관리 종사자 지정기준

구 분	명 칭	기 준
	총괄책임자	- 시험주관부서장(지역본부장 포함) 이상
	시험장 관리책임자	- 시험주관부서장(지역본부 처장 포함) 이상 ※ 단, 부득이한 경우 직하급자
	연금·채점 관리책임자	- 시험주관부서장(지역본부 처장 포함) 또는 직하급자 ※단, 부득이한 경우 시험주관부서장이 별도로 지정한 자
	교정 · 편집 · 인쇄요원	- 임직원
	문제출제·검토 ·선정·평가위원	- 내·외부 전문가(지정기준은 관계법령 및 공단 제규정 에 따름)
학과(필기), 실기(기능)	진행요원	- 임직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임직원 가족 가능
시험,	험, 영어 시험 감독요원	정 - 임직원(부족 시 퇴직직원, 공무원, 교직원, 공 공기관 직원, 부감독 3회 이상자)
항공영어 구술시험 및 교육		- 정 감독요원 자격이 있는 사람, 임직원 가족 부 (만 18세 이상), 시민, 봉사단체 구성원, 대학 생 등
		- 1개 시험실 2인~4인(수용인원 40명 기준 : 2인) ※ CBT 시험의 경우 별도 기준 적용
	채점요원	- 임직원
	실기(기능)시험 ·항공영어 구술면접 위원	- 내·외부 전문가(지정기준은 관련 지침에 따름)
	실기(기능)보조요원	- 임직원 또는 해당분야 관련 지식이 있는 자
	교육강사	- 내·외부 전문가

- ※ 위 지정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관리종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 시험관리종사자 소요인원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 ※ 임직원은 직제규정 제4조(직원의 구분)를 준용한다.

[별표 2] (제7조 관련) <개정 2012.7.17., 2015.3.3., 2018.9.20. 2020.2.26., 2020.12.24.>

시험 · 교육관리 종사자 세부임무

명 칭	임 무
총괄책임자	 ○ 시험실시에 관한 지침 시달 ○ 시험과 관련된 문제점 해결 ○ 제41조에 의한 서약서 징구 ○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
시 험 장 관리책임자	 ○ 시험당일 문제지이송요원으로부터 밀봉 날인된 문제지 인수 ○ 문제에 대한 의문이 있을 시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것은 조치하고 불가능한 것은 총괄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 ○ 감독요원 불참자 또는 지참자 발생 시 진행요원 대체 및 근무상태 점점 ○ 감독요원 서약서 징구 및 주의사항 시달 ○ 시험장 별로 시험 시행에 대한 보안 유지 ○ 밀봉날인한 문제지 및 답안카드, 시험용품을 문제지이송요원에게 인계
연금·채점 관리책임자	 ○ 문제검토·선정·평가위원 및 교정·편집·인쇄요원을 시험 종료 시 까지 외부와 격리된 장소에 연금 ○ 시험관리동 내 시험관리종사자 및 외부인 출입 통제·감시 ○ 교실별·보관용·여분용문제 봉투에 대한 최종확인 및 날인 ○ 밀봉 날인된 문제지를 시험 당일 문제지이송요원 책임자에게 인계 ○ 인쇄원지 및 교정원지, 인쇄중 발생한 파지의 파기(소각, 분쇄)시 입회 확인 ○ 채점업무에 대한 보안업무 담당 및 수거된 문제지 파기(소각, 분쇄)시 입회 확인 ○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보안업무
교정·편집 ·인쇄요원	 ○ 선정된 문제를 정답이 특정항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정 · 편집 · 인쇄 ○ 정서된 문제지의 원고 교정 ○ 교정이 끝난 원고 인쇄 후 오 · 탈자 확인 ○ 보관용 문제지는 각 과목별 정답이 표기된 원본, 인쇄용 원본, 인쇄본 원본 각 1매와 교시별 문제지 및 여분용 문제지를 봉투에 넣고 밀봉 ○ 봉투 봉인이 완료되면 각 시험장별로 내용물을 확인한 후 밀봉 ○ 문제지 인쇄 및 파지의 파기
문제출제 · 검토 · 선정 · 평기위원	○ 문제출제·검토·선정·평가업무 수행
진행요원	○ 각종 부착물(시험실 및 교육장에 대한 배치도, 안내표지, 진행본부 표시

명 칭	임 무
	등)의 부착 및 관리 ○ 각종 시험용품(인계·인수서, 감독표찰, 스탬프 등) 지급 및 회수 ○ 응시표 재교부 업무
	 ○ 시험 및 교육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벨 또는 타종, 필요시 안내방송 실시 ○ 시험실을 순회하면서 응시현황, 문제지 이상유무를 파악하여 시험장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조치 ○ 시험 종료 후 문제지, 답안카드를 회수하고 답안카드는 시험실별, 교시별로 인계 · 인수서를 기재한 후 밀봉날인하여 시험장관리책임자에게 보고
문제지 이송요원	 ○ 시험본부(교육장 포함) 및 주변정리 ○ 연금관리책임자에게 인수받은 밀봉날인된 시험문제지를 시험장관리 책임자에게 인계 ○ 시험장관리책임자로부터 인수받은 밀봉날인된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 시험용품을 채점관리책임자에게 인계
감독요원	 ○ 응시자 신원확인 및 "감독요원 행동절차"에 따라 시험을 진행 ○ 시험 부정행위를 방지, 적발 ○ 부정행위자의 기준 및 조치사항 숙지 ○ 시험 종료 후 문제지 및 답안카드 회수(수량 확인) 및 진행요원에게 인계 ○ 시험실의 기물보존과 청결 유지 및 시험 시행 환경에 대한 점검 ○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가능한 상황 조율 등 기타 사항 감독
채점요원	○ 채점을 위한 답안카드 이송 및 보관에 따른 보안유지 ○ 채점 및 문제지 파기
실기(기능) 시험·항공영어 구술면접 위원	○ 응시자 신원확인 및 실기시험 평가업무 수행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면접 업무 수행
실기(기능) 보조요원	○ 장비 등을 이용한 작업형 실기시험 감독 및 진행○ 장비 등을 이용한 작업형 실기시험 진행업무 보조
교육강사	○ 법령에 따른 교육시간 및 과목 등 절차 준수 ○ 기타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별표 3] (제7조 관련) <개정 2018.9.20., 2020.12.24.>

감독요원 행동절차

- 1. 시험실에 도착 즉시 수험자간의 간격을 조정한다.
- 2. 시험시간, 시행분야, 시험과목명, 합격자발표일, 응시현황을 흑판에 기재한다.
- 3. 응시표, 컴퓨터용싸인펜, 신분증 이외의 소지품은 교실 전면에 정리하도록 지시하며, 컴퓨터용싸인펜을 사용할 것을 강조한다.
- 4. 책상에 부착된 번호표 과목과 응시과목의 일치여부를 수험생에게 확인토록하고 이상이 있는 자는 부감독요원으로 하여금 시험본부에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한다.
- 5. 부정행위자 처리기준을 설명하고 부정행위자로 적발되면 2년간 응시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부정행위자 적발시 증거품 및 확인서를 징구하여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6. 답안카드 이면을 참고하여 기재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되, 수험번호, 유형별, 과목 코드 부분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7. 제2호 내지 제6호에 대한 교육이 끝나면 시험개시 5분전에 답안카드 및 문제지를 배부하여 문제지 이상유무를 확인하도록 하며, 이상이 있는 문제지는 교체하여 주고 이상이 없으면 문제지 우측상단에 각 장마다 수험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8. 문제지 배부가 시작되면 수험생의 출입을 통제하고 응시현황(대상, 불참, 현재인원)을 파악하여 흑판 우측 상단에 기재한다.
- 9. 시험시작을 알리는 벨 또는 타종이 울리면 시험개시를 선언하고 응시자 본인여부, 답 안카드 기재상태(수험번호, 유형, 과목코드)를 확인한 후 답안카드 확인란에 날인하여 야 한다.
- 10. 시험중 오·탈자 등은 정오표를 읽어주고 문제의 이상유무는 손을 들고 감독요원만 알 수 있도록 질문하게 한 후 시험본부에 보고, 그에 따른 지시를 받는다.
- 11. 시험시작 후 30분 이내에는 퇴실을 시키지 않는다.(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일부과목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퇴실이 가능하다.) 시험이 종료되면 문제지 및 답안카드를 회수하여 번호순으로 정리한 후 해당 교실별 봉투에 매수를 기재하며, 시험도중에 포기한 수험생의 답안카드도 회수하여야 한다.
- 12. 문제지·답안카드 및 시험용품의 회수가 끝나면 시험본부로 복귀하여 진행요원에 게 회수한 문제지·답안카드 및 시험용품을 인계한다.

[별표 4] (제9조제2항 관련) <개정, 2020.2.26.>

문제 출제 시 유의사항

(필기시험)

1. 기본지침

- 가. 당해 시험과목 및 출제기준 범위 내 실무에 필요한 내용으로 출제할 것
- 나. 문제는 특정 과목 또는 범위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출제할 것
- 다. 정답은 확실한 것 하나만 고르게 하되, 개인 주관에 좌우될 수 없고 객관적 타당도가 있을 것
- 라. 다른 문제와 관련되어 해답을 암시하는 것을 피할 것
- 마. 명백한 오답을 피하고 틀린 답이라도 혼동하기 쉬운 오답으로 표현할 것
- 바. 학설(또는 연구결과)에 따라 답이 유동적인 문제를 피할 것
- 사. 정답의 위치가 4개의 선택항목에 고르게 분포되게 할 것
- 아. 응시자가 1개 문제당 평균 1분 이내에 해답할 수 있는 문제일 것

2. 시험문제 작성

- 가. 질문과 답지항의 글은 되도록 쉽고 간결하게 작성할 것
- 나. 맺는 말은 명료하게 하며, 가급적 통일시킬 것
 - · 옳은 것은? (O) / 옳은 것이 무엇인지 골라라 (X)
 - · 옳은 것은? (O) / 맞는 것은?, 적합한 것은?, 적절한 것은? 등 (X) 옳지 <u>않은</u> 것은? (O) / 틀린 것은? 부적절한 것은?, 잘못된 것은? 등 (X)
- 다. 문항을 부정형으로 질문하였을 때에는 밑줄을 그을 것
- 라. "언제나, 반드시, 모든" 등 절대적, 단정적인 표현의 사용은 가급적 자제할 것
- 마. 답지항의 내용이 서로 이율배반이 되지 않도록 하며, 명백한 오답은 피할 것
- 바. 답지항을 배열할 때에는 가나다 순 또는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 순, 답지항 이 짧은 것에서 긴 것 순 등 정해진 순서에 맞을 것
- 3. 용어, 단위, 규격, 숫자 등의 표기방법
 - 가. 한글 전용. 다만, 원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에 원명을 삽입
 - 나. 외래어 표기 : 한글 맞춤법 통일안 사용
 - 다. 숫자: 아라비아 숫자(천 단위에 콤마(,) 표시)
 - 라. 단위 : SI 단위를 원칙으로 함
 - 마. 용어 : 법령, 국정교과서 등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용어, 숫자 및 단위를 사용

(기능시험)

1. 운전취급(기기취급)과 관련된 각종 취급능력 여부와 각종고장 및 이례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의 판단유무 등을 골고루 분포할 것

[별표 5] (제9조제4항 관련) <개정 2008.3.3., 2015.3.3> <삭제 2017.10.10>

부정행위자의 기준 및 적발시 조치사항(수정안)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사람						
	2.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사람						
	3. 감독관의 승인없이 답안지를 교환하는 사람						
	4. 학과 및 실기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와 대화를 하	는 사람					
	5. 감독관 및 시험기기의 안내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	를 따르지 않은 사람					
	6.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답안지를 작성한 사람					
	7.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	게 한 사람					
부정행위자	8.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사람						
기준	9. 사전에 문제를 알고 시험에 응시한 사람						
7 E	10. 대리시험 응시자 및 응시하게 한 사람						
	11.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품을 소지히	여 사용하거나 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이용한 사람						
	※ 휴대용 전화기, 녹음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노트북,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부착 펜, 스마트 워치, 테블릿 PC 등						
	12. 응시자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위·변조하여 제출한 사람						
	13.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응시						
	부정행위가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험행위의 중지 및 퇴실조치하고, 부정행위						
	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 할 경우에는 시험감독관						
	이 거부사실이 기록된 확인서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당해 시						
부정행위자	험의 총괄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단, 부정행위 사실을 영상처리기기						
적발 시 조치	(CCTV), 응시현장 유실물 등으로 사후에 확인한 때에는 그 즉시 당사자에게						
	유선통보 하여야 하고 부정행위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험감독관이 거부사실이 기록된 확인서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당해 시험의 총괄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나.					
	※ 확인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으로 한다.	2702 272					
	구 분 	시험응시 제한기간					
	가. 부정행위자 기준 1호부터 5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1회 위반한 사람	당해시험 불합격 처리					
	나. 부정행위자 기준 1호부터 5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시험일로부터 과거 1년간 동일시험에서 2회 위반한 사람	3개월					
	다. 부정행위자 기준 1호부터 5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1년					
처분양정기준	시험일로부터 과거 1년간 동일시험에서 3회 위반한 사람	10					
	│ 라. 부정행위자 기준 1호부터 5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 시험일로부터 과거 1년간 동일시험에서 4회 위반한 사람	2년					
	마. 부정행위자 기준 6 ~ 13 항목을 위반한 사람						
	※ 부정행위 적발일로부터 처분 확정일까지 해당 시험 응시를						
	※ 부정행위자 최종 처분이 혐의없음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 /	· ·					
	시험 응시 중 중도 퇴실조치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시험 수수	구료는 전액 환불한다.)					

[별표 7] (제45조제1항 관련) <신설 2024.12.5.>

임직원의 자격시험 응시 제한

적용범위	대 상	제한기간			
시험주관부서 임직원, 총괄책임자, 시험장관리책임자, 연금·채점관리책임자,		시험주관부서 재직중	해당 시험 응시불가		
교정 · 편집 · 인쇄요원, 진행요원, 감독요원, 채점요원, 실기시험위원, 실기보조요원	임직원	시험주관부서에서 다른부서로 전보	전보일로부터 2년간 해당 시험 응시불가		
연금·채점관리책임자, 교정·편집·인쇄요원, 진행요원, 감독요원, 채점요원, 실기시험위원, 실기보조요원	시험주관부서 외 임직원	연금·채점관리책임자로 최종 참여한날로부터 2년간 해당 시험 응시불가 교정·편집·인쇄요원, 진행요원 감독요원, 채점요원, 실기시험위원 실기보조요원으로 최종 참여한 날로부터 1년간 해당 시험 응시불가			
	기간제 근로자	해당 시험	응시불가		
문제출제·검토·선정· 평가위원, 실기시험위원	임직원	임직원 위원으로 최종 참여한날로부터 2년간 해당 시험 응시 불가			

[※] 시험주관부서의 범위에는「직제시행세칙」별표 4에 따른 지역본부 자격시험업무도 포함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9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3호 관련)

시 험 문 제 카 드

<u>문 제</u>			

─ <u>[문항 및 정답 해설]</u> ·	

[문항 속성]

류	
격 명	
목 명	
룹 명	
목 명	
이 도	
답	
도 서 명	
출판사/발행년도	
저 자	
페이지/관련조항	
제 가	
제 일	
수 자	
수 일	
	격 명 목 명 목 명 의 도 답 도 보 서 명 명 당 다 명 명 당 다 대 다 지 자 지 의 수 자

210mm×297mm 일반용지 120g/m² [별지 제2호서식] (제10조제4항 관련) 삭제 <2018.9.20.>

[별지 제3호서식] (제10조제4항 관련)<개정 2015.3.3., 2018.9.20.>

시험관련 서류 폐기 관리대장

-11-1 A1-1	-11 -11 -11 -11	- 기 - 기	폐기		확	ul ¬	
폐기일자	폐기대상	폐기수량	파기자	서명	확인자	서명	비고

210mmx 297mm 보존용지 70g/m² [별지 제4호서식] (제16조제2항) <개정 2017.5.1>

인계·인수 및 파기확인서

- 1. 시험문제지 시험장 인계·인수
 - 인계 · 인수일 :

<인 계		⟨인 수	
수량 :	수량: 매		OH
	(서명)		(서명)

- 2.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OMR카드) 회수
 - 인계 · 인수일 :

가. 시험		나. 답안지(OMR 카드)			
수량 :	OH	수량: 매			
인계자	(서명)	인계자	(서명)		
인수자	(서명)	인수자	(서명)		

- 3. 시험문제지 파기
 - 문제지 파기일 :

문제지 파기수량	Oll
파 기 자	(서명)
확 인 자	(서명)

[별지 제5호서식] (제17조제4항 관련)

응시

명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열표

제 교실 분야 :			감독위원 감독위원				①①			
친 다 .	단아: 심득위된					1.5				
,				'n	1	단				
총원		명	분야	목						
H =1		тH								
불참		명 _								

210mm×297mm 신문용지 70g/m² [별지 제5호의2서식] (제24조제2항 관련) <신설 2018.9.20., 개정 2020.12.24..>

시험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작성합니다.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10일			
응시시험 명					
ام اجاما	성명	전화번호			
신청인	주소	이메일			
결과통지를 받은 날	년	월 일			
결과통지 내용					
불복의 이유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불복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험되관계없는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욕설 및 비방, 허위사실 등은 시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민·형사상의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국가자격시험관리세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2.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별지 제6호서식] (제30조제3항 관련)<개정 2011.6.2, 2015.3.3., 2017.12.4., 2018.9.20.> 【외부위원용】

시험관리위원 청렴서약서

소 속:

직 위:

성 명:

- 위 본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약하며,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그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4. 심의 안건의 시행으로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 5.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안건 대상 업체 등에 재직한 경우
 - 6.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심의안건과 관련된 감독부서에 소속된 경우
-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의결에 임하 도록 하겠으며, 동 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은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별지 제7호서식] (제30조제3항 관련) <개정 2011.6.2., 2017.12.4, 2018.9.20.>> 【내부 위원용】

시험관리위원 청렴서약서

소 속:

직 위:

성 명:

위 본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의결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동 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은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별지 제8호서식] (제33조제2항 관련) <개정 2011.6.2., 2017.12.4>

위 임 장

본인은 귀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험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금번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 차 ○○위원회(20 . .)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합니다.

대리인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위임인 소 속 직 위 성 명 (인)

20 . .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험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제37조제1항 관련) <개정 2011.6.2>

제 차 시험관리위원회 회의록

- 1. 회 의 명
- 2. 일 시
- 3. 장 소
- 4. 참 석 인 원
- 5. 심 의 사 항
- 6. 주요토의내용

7. 참석자 서명

구		분	,	성	명		서	τ	경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10호서식] (제37조제1항 관련) <개정 2011.6.2., 2024.0.00>

서 면 결 의 서

- 1. 안 건
- 2. 주요토의내용

상기 안건에 대하여 국가자격시험관리세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결의코자 하니 검토 후 동의 여부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구	분	성	명	의 견 (찬·반)	서	명
위	원 장			세칙 제35조2항에 따라 가부동수일때만 의결권을 가진다.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11호서식] (제42조제1항 관련) <개정 2011.6.2., 2015.3.3., 2017.12.4., 2024.12.5.>

서 약 서

본인은 국가자격시험 문제를 출제 및 채점(총괄책임, 연금관리, 교정·편집·인쇄관리, 문제검토·선정·평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1. 본인은 출제위원(연금·채점관리, 교정·편집·인쇄관리, 문제검토·선정·평가)임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 2. 본인은 출제위원(문제검토·선정·평가)으로 최종 참여한 날로부터 2년간 해당 자격 시험을 응시하지 않는다.
- 3. 본인은 국가자격시험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집 발간·편집·외부강의 등 기타 이에 관련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 4. 출제 문제에 대하여는 강독하지 않는다.
- 5. 출제 문제를 복사, 구두 또는 기타 방법으로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는다.
- 6.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개인정보 등)를 누설한 경우 출제위원 자격박탈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생년월일: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2호서식] (제42조제1항 관련) <개정 2011.6.2., 2015.3.3., 2017.12.4., 2024.12.5.>

감독요원 서약서

국가자격 학과시험 감독요원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맡은 바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공정하고 철저한 감독요원으로 일함은 물론 당해 시험실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응시원서와 신분증을 대조하여 응시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한다.
- 2. 응시자 상호간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엄격히 감독한다.
- 3. 응시자에게 공평친절하게 대하고 고의로 시험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가 없도록 한다.
- 4. 기타 감독요원 근무요령에 의거 시간적 절차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수행한다.
- 5.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개인정보 등)를 누설한 경우 감독요원 자격박탈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생년월일: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u></u> 8	수 증		
		(₩)	
 상기 금액·	으로 F		 으로 정히 영수현	<u>i</u>]-
		1 1 11 2 1 0	0 , 0 , 1	_
	` ,			
•	•	,	`	
계좌번호(본인명의)	:	()	
강사료 등 제수당	당 지급을 위한 기	배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당 동의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	게이저버버충버ㅣ드	과러 버러사이	게이저버 버충	그저으 즈스치머
전국교등단선 8년는 17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			· -	
제22조, 「국세기본법 시학				
같은 법 시행령 제193조		. ,		
지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에 대한 동의 (필수)		
수집:이용 목적	강사료 등 제수당 7		신고 업무 수행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u>성명^[1], 주소,</u> 계좌빈			
보유·이용 기간	<mark>5년</mark> [2]			
수집.이용 동의 거부 권리	귀하는 상기 개인정 다만, 상기 항목에 수령에 제한될 수 9	대한 동의를 거부	부하실 경우, 강사	
※ [1] 성명은 예금주와 동일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			를 위해 5년간 보	 L관 후 파기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	까? □ 동의힘	}-
			□ 동의ㅎ	가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주민등·	록번호) 수집·이용·	에 대한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세기 제193조 및 제213조에 따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유성	강사료 등 제수당 지	급 및 기타소득 신	고를 위해 원천징	-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인	· 산전공단 귀호	}	

서 약 서

본인은 국가자격 실기시험의 진행 및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1. 본인은 실기시험 수험자가 수험자 본인임을 확인하였으며 대리시험 응시에 대한 책임을 진다.
- 2. 본인은 합격 발표일까지 수험자에게 합격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며 합격/불합격을 암시하는 어떠한 언행도 하지 않는다.
- 3. 본인은 실기시험 진행상에 취득한 수험자 개인 신상정보 및 기타 시험관련 자료를 다른 곳에 유용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는다.
- 4.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개인정보 등)를 누설한 경우 시험위원 자격박탈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생년월일: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5호서식] (제42조제3항 관련) <개정 2011.6.2., 2015.3.3., 2017.12.4., 2024.12.5.>

보 안 각 서

본인은 국가자격시험 실기시험을 보조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1. 본인은 실기시험 보조요원임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 2. 본인은 실기시험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는다.
- 3.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개인정보 등)를 누설한 경우 시험위원 자격박탈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생년월일: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6호서식] (제42조제4항 관련) <개정 2011.6.2., 2015.3.3., 2017.12.4., 2018.9.20., 2024.12.5.>

수험자 서약서

아래 본인은 귀 공단에서 시행하는 제 차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실기시험(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에 응시함에 있어, 시험 중 본인의 부주의나 기능 미숙 등으로 인해 본인 또는 타인의 신체 및 시험장비·시설 등을 훼손했을 경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으며, 공단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시 험 장 :

시험일자: 년 월 일

수험번호	성 명 (본인기재)	생년월일	서 명

[별지 제16호의2서식] (제42조제5항 관련) <신설 2018.9.20., 2024.12.5.>

교육 강사 청렴서약서

위 본인은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종

사자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교육 강사로 위촉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합격자 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기간 중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과 관련된 문제집 제

작, 강의 등 영리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합격자 교육 강사로 위촉된 것을 이용하여 개인 또는 소속된 회사의 이익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3.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교육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및 자료를

교육 외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상기 내용과 상이할 경우 교육 강사 자격박탈은 물론 민 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 사 장 귀 하

52

[별지 제17호서식] (제43조제2항제4호 관련) <개정 2008.11.10, 2011.6.2., 2015.3.3., 2017.12.4., 2020.12.24.. 2024.12.5.>

환 불 신 청 서

				담당	}	처장
응시 시험	명			수험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접수 금액			환불	금액		
환불신청 사유						
k = -11 =1	은	행명	계죄	-번호		예금주
송금계좌						

위와 같이 200 년도 ()차 () 시험(심사) 중 (필기(학과), 기능(실기)) 시험의 응시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요청합니다.

본 인 신청시 : 성 명 (인 또는 서명)

대리인 신청시 : 성 명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

신청일: 년 월 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인 및 본인의 신분증 우편 및 팩스 신청 시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사본

4.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별지 제18호서식] (제44조제2항 관련) <개정 2011.6.2, 2015.3.3>

부정행위자 연명부

성 명	생년월일	주	人	부정행위	응시자격	정지기간	ठी	인	固	7
78 78	78 11 11 11	T	<u>ar</u>	내 용	자	지	4	ี น	H1	-11-

처분 사전통지서

문서번호 : 시 행 일 :

수 신: [*성명(주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공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첨부된 서식에 의거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 (명칭)					
2. 3/1/1	주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근거						
			기관명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서명	
6. 의견제출		제 출	주 소		전화번호	
0. 의전제출		최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제출기한	송달일로투	부터 10일	이내

한국교통안전공단

[별지 제20호서식] (제44조제2항 관련) <신설 2024.12.5.>

이거레츠괴

		읙	선 세	술 서			
※ 아래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리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월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면의 사항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첨부된 별지 제 20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공단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통지서

성명		
주소		
	위반사항	
행정처분 통지사항	처분내용	
	근거법령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 구 절 차	행정심판의 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청 구 기 간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한국교통안전공단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제47조제2항 관련) <신설 2024.12.5.>

테스트 자격번호 관리대장

이름 사원 번호 자격 번호 등록 등록 부서장 확인 비고 함인 비고 함인 기계		2) 6)	기 개	기 개		자격 등록		자격	삭제	
	이름	사전 번호	구분	사석 번호	등록 일자	등록 사유	부서장 확인	삭제일자	부서장 확인	비고

[별지 제23호서식] (별표6 관련) <신설 2024.12.5.>

확 인 서

귀 공단에서 시행하는 20 년 월 일()차() 자격시험을 다음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였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확약합니다.

	T	
	수험번호	
작성자	성명(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내 용		
(6하원칙)		

20 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시험감독(정) (서명)

시험감독(부) (서명)

확인자(시험장관리책임자) (서명)